

계절학기에 관한 규칙

제정 2013. 3. 4.

제1차 개정 2014. 5. 26.

제2차 개정 2015. 12. 15.

제3차 개정 2016. 11. 18.

소관부서 : 교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창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7조 제3항에 의한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계절학기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학칙에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학기를 말한다.

제3조(수강대상)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(개설교과목) ① 계절학기 개설교과목은 전 과목을 자유롭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, 10명 이상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한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0명 미만일 때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12.15.>

② 계절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은 학과에서 요청한 전공과목과 교무처에서 지정한 교양과목을 계절학기 수강신청 접수기간 1주일 전까지 선정하여 공고한다.

제5조(학점취득)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)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.

제7조(수업료) ① 계절학기 수강신청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기간 이후 등록취소, 결석 등으로 인하여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폐강으로 수강이 취소된 경우 등록금을 환불한다.

② 수업료는 해당 계절학기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26.>

제8조(수업) ① 1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② 실험, 실습,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으며 집중수업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험) ① 계절학기 수업의 성적평가는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<개정 2016.11.18.>

제10조(성적) ① 계절학기 수업의 성적평가 방법은 정규학기의 평가방법과 같으며,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한다.

②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, 전 학년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,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시의 성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 계절학기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성적평가 방법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